인천광역시 중구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迈 결	
_	



제 544 호 2012년 9월 17일 월요일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중구·	·고 제2012-770호(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 조례입법예고및의견수렴) ······
○인천광역시중구·	·고 제2012-773ㅎ(이처관역시주구고무벼ㅎ사우연조례저부개전
○인천광역시중구·	조례안입법예고)고 제2012-774호(인천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중구·	·고 제2012-775호(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의실비변상 조례폐지조례안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중구·	·고 제2012-776호(인천광역시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중구·	·고 제2012-777호(인천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고 제2012-778호(인천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인천광역시중구	·고 제2012-779호(인천광역시중구자체감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중구:	고 제2012-780호(인천광역시중구사무인계인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규칙안입법예고)
	·고 제2012-783호(개발부담금체납에따른자동차압류통지공시송달 게재의뢰(YFC건설))1
○인천광역시중구·	·고 제2012-784호(유기동물보호공고 및보호의뢰) ·············· 1 ·고 제2012-787호(담배소매인폐업신고에따른지정신청공고) ··· 1
○인천광역시중구·	·고 제2012-789호(무단방치차량자진처리공시송달공고의뢰) … 1 ·고 제2012-790호(담배소매인폐업신고에따른지정신청공고) … 1
○인천광역시중구·	·고 제2012-792호(무단방치차량자진처리공시송달공고의뢰) … 1 ·고 제2012-793호(유기동물보호공고및보호의뢰)
○인천광역시중구	종출장소공고 제2012-57호(식품위생법위반업소행정처분(영업장폐쇄 공시송달공고) ····································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중구 편집 : 공보실

卫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2-770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09, 07,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인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다급)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의 제2조 제2호 지방전임 계약직공무원 의사 [별표 2] 의 지급 구분표 중 "다"급 신설
- 제명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로 띄어쓰기함.

3.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9월 26일까지 인천광역시중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소 : (우400-701)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가 9)

인천광역시 중구 총무과(인사교육팀)

▶ 전화 : 032)760-7172 (fax 032)760-7159)

□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 .

제 출자: 중구청장

□ 제 안 이 유

-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인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다급)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의 제2조 제2호 지방전임 계약직공무원 의사 [별표 2] 의 지급 구분표 중 "다"급 신설
- 제명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로 띄어쓰기함.

□ 참 고 사 항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 별표9의 제2호
-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 제2조 제2호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호에서 위임된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일반직공무원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 2.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 당지급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 의 수당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수당등에</u> 관한규정(이하"영"이라 한다)제14조의 규 <u>정에 의한</u>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함</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 수</u> 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의 특수업 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호에서 위임된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u>영[별표9]제2</u>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 제 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의사: [별표1]의 지급 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 [별표2]의 지급 구분표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의 특 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업무를 직접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지급구분표

전임계약직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구분표

 \mathcal{Z}

温

월 634,000원 628,000원 617,000원 611,000원 622,000원 ľπ 하 寸 ᆁ 缩 월 973,000원 월 967,000원 월 961,000원 월 956,000원 950,000名 ďπ 이하 <u>수</u> 쉬 \overline{a} ₹0 월 1,306,000원 월 1,312,000원 월 1,300,000원 월 1,295,000원 월 1,289,000원 ľĮπ =이하 7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근무년수별 월 973,000원 월 967,000원 월 961,000원 월 956,000원 950,000名 ЦП 이하 이하 \uparrow 월 1,306,000원 월 1,312,000원 월 1,295,000원 월 1,300,000원 월 1,289,000원 嗡 ĽΠ 하 0 7 强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 근무년수별

	부서별	열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	배여부등 검토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	가대책위등 심의				
	3. 조직 및 예	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	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서별	제출의견	검토	.내용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2-773호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9, 07,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운영에 있어 행정・민사 소송 뿐만이 아니라 형사소송 등의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에 있어서도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 하여 각종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 위촉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5명 이내로 증원하여 소송업무 추진에 전문성을 확보 하고, 법률자문에 있어서도 다양한 견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의 직무(안 제2조제1항제2호)
- 구 소속 직원의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 및 법률사안에 관한 사항 신설
- 위촉 고문변호사를 5명 이내로 함 (안 제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개정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기획감사 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소 : (우400-701)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9)

인천광역시 중구청 기획감사실(법무감사팀)

▶ 전화 : 032)760-7084 [fax 032)760-7059]

□ 공청회 개최 :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 9 . . 제 출자:기획감사실장

□ 제 안 이 유

-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운영에 있어 행정・민사 소송 뿐만이 아니라 형사소송 등의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에 있어서도 고문변호사를 확대 운영 하여 각종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 위촉 고문변호사를 2명에서 5명 이내로 증원하여 소송업무 추진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률자문에 있어서도 다양한 견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주 요 내 용

- 고문변호사의 직무(안 제2조제1항제2호)
- 구 소속 직원의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 및 법률사안에 관한 사항 신설
- 위촉 고문변호사를 5명 이내로 함 (안 제3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개정

□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각 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두는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법률사안에 관한 사항
 - 2.구 또는 구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수행 및 법률사안에 관한 사항
 - 3.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 4.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 및 법률사안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위촉 등) 구청장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제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1.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 2.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3.그 밖에 위촉 해제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제5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사건의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하 여야 한다.
- 제6조(소송비용 등)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및 사례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단,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절차 등) ①제2조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기획감사실장은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 중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구 소속기관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업무처리에 참고하게 하여야 한다.
- 제8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 (사건실적부를 말한다)을 작성하여 월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 으로 본다.

[별표]

소송비용과 수당의 지급 기준(제6조 관련)

구	분	지 급 기	준	승 소 사 례 금
	正	내 용	착 수 금	중소사제 급
신청/	사가	변론이 없는 경우	200,000	없 음
11.07	ነናፈ!	변론이 있는 경우	400,000	HX D
	,	2천만원미만 및 무소가사건	500,000	
	_ 소 - 송	2천만원이상 3천만원미만	1,000,000	1. 전부승소시
	- 물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1,500,000	착수금의 150%
	_ 가	5천만원이상 1억원 미만	2,000,000	2. 50%이상 승소시
민사	액	1억원이상 2억원미만	2,500,000	에는 착수금액에
소송		2억원이상 3억원미만	3,000,000	승소율을 곱한 금액
•	7]	3억원이상 4억원미만	3,500,000	
행정	준	4억원이상 5억원미만	4,000,000	3. 화해, 인락, 소취하
소송		5억원이상	4,500,000	등의 경우에는
		상소심	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	착수금의 2분의 1
		환송사건	본안소송 착수금의 1/2이내	
7]	타	1. 인 지 대 2. 송 달 료 3. 검 증 비 4. 감 정 료 5. 기타비용	실 액 액 액 액 액 액 액	
고문변	호사 당		300,000원 이내	

- 1. 소가 5억원 이상은 5억원으로 본다
- 2. 수당, 착수금,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 하여 지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 건 실 적 부(제8조 관련)

연 번	○○사건 (업무) 관련	문의내용	회시내용	문의 및 회시 연월일	비고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	· 배여부 등 검토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	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	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l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	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	내용
	1	I .	1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2-774호

「인천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9 07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인천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로 띄어쓰기함.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 에"로 하는 등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개정함

3. 의견제출

- O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소 : (우400-701)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가 9)

인천광역시 중구청 기획감사실(법무감사팀)

▶ 전화 : 032)760-7084 [fax 032)760-7059]

□ 공청회 개최 :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그 산하 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1.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 2.구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 ②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1.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된 경우
 - 2.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2.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3.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

②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공무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무 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인천광역시중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또는 인 천광역시중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 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당사자로 하 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 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 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 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 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 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 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로 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 무 취급공무워
- 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 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 배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또는 인 천광역시중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 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당사자로 하 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 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 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 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 당한다.
 -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 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 을 받은 경우
 - 2. 구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 |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 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 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배분한다.

현 행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u>1에</u>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u>1에</u>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 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 인 경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 따라 <u>이를 지급할</u> 수 있다.
 - 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
 -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u>의한</u>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
 -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인당 20,0 00원 이내
 - ②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이 조례에 <u>의하여</u> 포상금을 지급 받은<u>자</u>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 되는 자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 정 안

-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판결이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 ②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u>어느 하나에</u>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된 경우
 -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 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 우
-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 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 따라 <u>지급한</u> 다.
 -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u>따른</u> 소액사건의 경 우: 1인당 20,000원 이내
 -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인당 20,0 00원 이내
 -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표창) 이 조례에 <u>따라</u> 포상금을 지급 받은 <u>공무원</u>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u>공무원에게는</u>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거 ㅌ	 L 구	<u>坦</u>	유	무	
				π	<u> </u>	
	1. 관련법령 위	배여무 능 기	섬 노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	가대책위 등 🗸	심의			
	3. 조직 및 예~	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	해여부			
	5. 홍보계획(보	.도자료) 반영	형 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ㆍ	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7	세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2-775호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9 07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상위법인 「민사소송규칙」,「민사소송비용규칙」 에 따라 법원에 예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소 : (우400-701)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가 9) 인천광역시 중구청 기획감사실(법무감사팀)

▶ 전화 : 032)760-7084 (fax 032)760-7059)

□ 공청회 개최 : 없음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 . . 제 출자:기획감사실장

□ 제 안 이 유

○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상위법인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 용규칙」에 따라 법원에 예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폐지

□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
- 「민사소송규칙」
- 「민사소송비용규칙」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볔 혐의 및 의겨수렴서

	<u> </u>	! 엽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로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	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	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	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u> </u>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	.내 용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2-776호

「인천광역시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9 07

인 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정법규 적용에 대한 민원방지 및 행정절차 안내 등은 조례가 없어도 각 부서에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이용으로 현재 상담 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

3. 의견제출

- O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소 : (우400-701)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가 9)

인천광역시 중구청 기획감사실(법무감사팀)

▶ 전화 : 032)760-7084 [fax 032)760-7059]

□ 공청회 개최 : 없음

인천광역시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 . .

제 출자:기획감사실장

□ 제 안 이 유

○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행정법규 적용에 대한 민원방지 및 행정절차 안내 등은 조례가 없어도 각 부서에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이용으로 현재 상담 실적이 없는 유명 무실한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인천광역시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

□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2조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무서 멀	. 엽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	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	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	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1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	내용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2-777호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9. 07.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 같은법 제16조로 변경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7 삭제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하는 등 한글 맞춤 법에 따라 개정함.

3. 의견제출

- O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소 : (우400-701)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가 9)

인천광역시 중구청 기획감사실(법무감사팀)

▶ 전화 : 032)760-7084 (fax 032)760-7059)

□ 공청회 개최 :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 . . 제 출자:기획감사실장

□ 제 안 이 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에서 같은법 제16조로 변경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17 삭제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에 의하여"를 "따라"로 하는 등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개정함.

□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6조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 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 구 분	유	무
	1		Т	<u> </u>
기도 기치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젊이케ㅇ	실·과별	부서별(실·과) 의견 제출의견	거드	내용
협의개요	결・파일	세달의선	심도	भिठ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2-778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 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9 07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근거법규 정비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법규 정비(안제3조제1항3)
- 삭제 : 법 제14조의4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한 승인
- 관할공직유관단체(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관할 대상으로 추가함(안제3조제2항3)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는 등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개정함

3. 의견제출

- O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소 : (우400-701)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가 9)

인천광역시 중구청 기획감사실(법무감사팀)

▶ 전화 : 032)760-7084 [fax 032)760-7059]

□ 공청회 개최 :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 . .

제 출자:기획감사실장

□ 제 안 이 유

○ 근거법규 정비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근거법규 정비(안 제3조제1항3)
 - 법 제17조제1항 →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 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 삭제 : 법 제14조의4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에 의한 승인
- 관함공직유관단체(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의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관할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3조제2항3)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는 등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개정함

□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제9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2.2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 1.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2.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 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 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 2.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라 승인
 - 3.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 4.그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 1.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이하 공무워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 2.구 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 3.관할공직유관단체(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다)의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구 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③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하다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5조의2(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 2.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 3.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 4.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1.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 2.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 ④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 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무 대비표

혂 행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직자윤리법」</u>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 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제2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 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 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 로 구성하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 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 는 임명한다.
 -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 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한다.
 - 2. 2인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다음 각호에 의거 선임한다.
 -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 역시중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 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구의회의 추천 을 받아야 한다.

- 1.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u>사람</u>중에서 위촉한다.
 - 2. 2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 하 "구의원"이라 한다)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 선임하여야 한다.
-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 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 정 안

을 심사 결정한다.

- 결과의 처리
- 2. 법 제8조제12항 후단<u>의 규정에 의한</u> 2. 법 제8조제12항 후단<u>에 따라</u> 승인 승인
-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승인

4. 법 제14조의4 제1항 제2호 가목 규 < 삭 제 > 정에 의한 승인

- 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다.
- 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 2.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 신 설 >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사 결정한다.

- 1. 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 공직자윤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 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따라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 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 확인 및 취업숭인과 제18조의2 제3항 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 5.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하다
- 1.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5급이하 공무 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 자에 관한 사항
 - 2. 구 의회 소속 5급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 3. 관할공직유관단체(인천광역시 중구 시설 관리공단을 포함한다)의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현 했

개 정 안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 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 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 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인천광역시중구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 ② 구 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 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 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 인 기간으로 한다.
- ③제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 중 결 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의 직무를 통할한다.
-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직무를 통할한다.
 -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제5조의2(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 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 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했

- 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 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
 -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징계의결의 요구
 - 자에 대한 고발
 -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 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 족의 관계에 있었던 <u>자</u>와 관계있는 사
 -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 의 재적위원수의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 외하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 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 1.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 의 요구
 - 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u>사람</u>에 대한 고발
 - 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 족의 관계에 있었던 <u>사람</u>과 관계있는 사항
 -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있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 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u>기타</u>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 ,	. 됩니 중 시선무답시		
	검 토	.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	배여부 등 검토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	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	.내 용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2-779호

「인천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9, 07,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 밖의"로 하는 등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개정함

3. 의견제출

- O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소 : (우400-701)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가 9) 인천광역시 중구청 기획감사실(법무감사팀)

▶ 전화 : 032)760-7084 (fax 032)760-7059)

□ 공청회 개최 :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 . . 제 출자:기획감사실장

□ 제 안 이 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을 "그 밖의"로 하는 등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개정함

□ 참 고 사 항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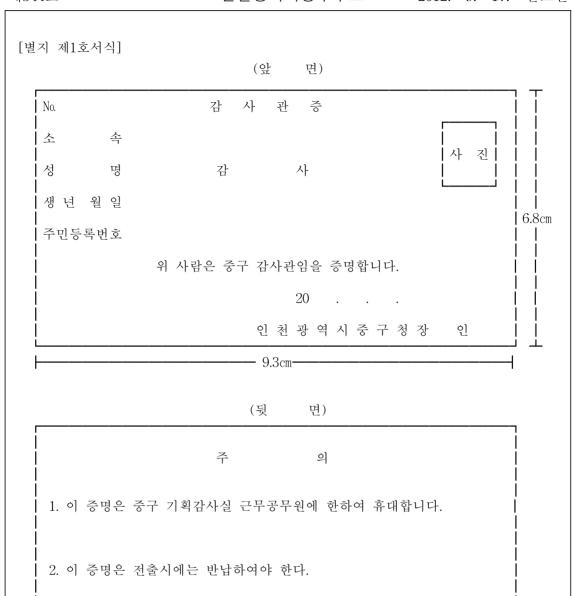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자체감사 실시대상범위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자체감사는 법령 조례나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 제3조(감사관과 감사요원) ①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요원을 둔다. ②감사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 감사실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 ③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한다.
 - ②종합감사, 부분감사는 2년에 한차례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종합감사를 햇한 피감사기관에는 부분감사를 햇할 수 없고 부분감사를 행한 피감사기관에는 해당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기강감사는 구청장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한다.
- 제5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 1.구 본청 및 산하기관
 - 2.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조합, 투자기관
 - 3.구 금고 및 구비보조단체(단. 소관부서장의 조사협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5조의2(감사의 범위) ①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는 각 호의 사항 중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한다.
 - 1.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 2.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 3.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 4.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 5.법령·조례·훈령·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 6.지방의회의 결의 및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 7.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 8.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출납에 관한 사항
- 9.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 10.세입·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사항
- 11.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12.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 13.구세 및 세외수입과징에 관한 사항
- 14.사무관리개선 및 문서부책에 관한 사항
- 15.본청과 동·사업소·출장소·공단 또는 국·실·단·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 그 밖의 산하 기관
- 16.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 17 민원서류처리사항
- 18.전회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사항
- 19.그 밖에 감사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특별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무 처리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하여 행한다.
- 제6조(계산서 등의 제출) 감사를 받는 사람은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그 밖의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서면, 실지감사) 감사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하는 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 제8조(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 ①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출석 답변의 요구
 - 2.증빙서, 변명서, 관계문서, 물품 등의 제출 요구
 - 3.창고, 금고, 문서, 물품 등의 봉인
 - ②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제9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①구 산하기관의 장과 본청 각 실·단·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획감사실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될 때
- 2.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 ②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사무처리규칙 제15조·제16조를 따른다.
- 제10조(감사관의 유의사항) ①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③감사관이 감사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감사관은 감사 시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⑤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 증빙서, 그 밖에 서류 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표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11조(감사결과 보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하는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종합· 부분감사는 20일 이내에, 기강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피감사기관명
 - 2.감사실시기간
 - 3.감사관의 직·성명
 - 4.시정, 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 5.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
 - 6.범죄로 인정되는 사항
 - 7.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 8.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 9.감사상 취한 조치
 - 10.모범이 되는 사항
 - 11.건의 사항
 - 12.그 밖의 특이 사항
-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은 감사실시 결과 지시, 그 밖의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30일 이내에 기강감사는 15일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혂 행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중구(이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하"구"라 한다) 자체감사 실시대상범위 자체감사 실시대상범위 및 방법과 그 및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 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u>구자체감사는</u>제2조(타 규정과의 관계) <u>인천광역시 중</u> 법령 조례나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구(이하 "구"라 한다) 자체감사는 법령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조례나 다른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감사관과 감사요원) ①자체감사를|제3조(감사관과 감사요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요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요 원을 둔다. 원을 둔다. ②감사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감사 ② 감사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감사 요원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 요원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 청장"이라 한<u>다)</u>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명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이외에 따로 임명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감사관을 둘 수 있다. 정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③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 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현 했

-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한다.
 -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 해연도에 종합감사를 행한 피감사기관 에는 부분감사를 행할수 없고 부분감사 를 행한 피감사기관에는 해당부분에 한 하여 종합감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 다.
 - ③기강감사는 구청장의 명령 또는 감사 ◎ 기강감사는 구청장의 명령 또는 감사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한다.

- **제4조(감사의 종류등)** ①감사는 종합감사, **제4조(감사의 종류등)** ①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한다.
 - ②종합감사, 부분감사는 2년에 1회이상 ② 종합감사, 부분감사는 2년에 한차례이 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종합감사를 행한 피감사기 관에는 부분감사를 행할수 없고 부분감 사를 행한 피감사기관에는 해당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한다.

- 음 각 호의 1과 같다.
 - 1.구본청 및 산하기관
 - 투자기관
 - 서장의 조사협의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정한다)
- |**제5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제5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 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 1.구본청 및 산하기관
 - 2.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조합, 2.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 조합, 투자기관
 - 3. 구 금고 및 구비보조단체(단, 소관부 3. 구 금고 및 구비보조단체(단, 소관부 서장의 조사협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 정 안

제5조의2(감사의 범위) ①종합감사는 다 제5조의2(감사의 범위) ① 종합감사는 다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한다.

-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 6. 지방의회의 결의 및 건의에 대한 조치사
-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출납에 관한 사 핤
-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 10. 세입·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 관 집행사항
-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
-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 13. 구세 및 세외수입과징에 관한 사항
- 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부책에 관한 사항
- 15. 본청과 동ㆍ사업소ㆍ공단 또는 국ㆍ 실 · 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협
- 조 기타 산하 기관

음 각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는 각 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는 각 호의 사항 중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 호의 사항 중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한다.

- 및 침투상황
-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 5. 법령·조례·훈령·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 5. 법령·조례·훈령·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
 - 6. 지방의회의 결의 및 건의에 대한 조치사
 -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출납에 관한 사
 -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 10. 세입·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 관 집행사항
 - 11.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
 -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 13. 구세 및 세외수입과징에 관한 사항
 - 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부책에 관한 사항
 - 15. 본청과 동・사업소・출장소・공단 또는 국・실・단・과 상호간 및 관계기 관과의 연락협조 그 밖의 산하 기관

현 행	개 정 안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처리사항 18. 전회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사항 19. 기타 감사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특별감사는 공무원의 복무상태, 민원사 무 처리상황 및 특정사항의 조사를 위 하여 행한다.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계산서등의 제출) 감사를 받 는 <u>자는</u> 감사관의 지시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u>기타</u> 의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제7조(서면, 실지감사) 감사관은 제6조 <u>에</u> <u>따라</u>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하는 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 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개 정 안

- 제8조(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등) ①감 제8조(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등) 사관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 답변의 요구
 - 제출 요구
 - 3. 창고, 금고, 문서, 물품등의 봉인
 - ②제1항 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② 제1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 고 인정되는 사람의 출석 답변의 요구
- 2. 증빙서, 변명서, 관계문서, 물품 등의 2. 증빙서, 변명서, 관계문서, 물품 등의 제출 요구
 - 3. 창고, 금고, 문서, 물품등의 봉인
 -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9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기획감사실장을 거쳐 구청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될 때
-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 원사무처리규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 정에 준용한다.

제9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 ①구 산하기관의 장과 본청 각실·과장은 ① 구 산하기관의 장과 본청 각실·단·과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기획감사실장을 거쳐 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발견될 때
 -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 원 사무처리규칙 제15조 •제16조를 따른 다.

- |제10조(감사관의 유의사항) ①감사관은|제10조(감사관의 유의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기관의 업무 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 거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 정능률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③감사관이 감사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 한 사실은 즉시 권한있는 상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 ④감사관은 감사 시행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⑤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 를 행한 계산서, 증빙서, <u>기타</u> 서류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표 제2호서식에 의하여 감사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기관의 업무 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③ 감사관이 감사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 한 사실은 즉시 권한있는 상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 ④ 감사관은 감사 시행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⑤ 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감사 를 행한 계산서, 증빙서, 그 밖에 서류 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표 제2호서 식에 따라 감사한 뜻을 기록하여야 한 다.

혅 행

개 정 안

제11조(감사결과 보고) 감사관은 감사를 제11조(감사결과 보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하는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피감사기관명
- 2. 감사실시기간
- 3. 감사관의 직·성명
- 4. 시정, 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 한 사항
- 6. 범죄로 인정되는 사항
- 7.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 9. 감사상 취한 조치
- 10. 모범이 되는 사항
- 11. 건의 사항
- 12. 기타 특이 사항

종료하는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 터 종합·부분감사는 20일이내에, 기강감 터 종합·부분감사는 20일이내에, 기강감 사는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는 10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피감사기관명
- 2. 감사실시기간
- 3. 감사관의 직·성명
- 4. 시정, 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 한 사항
 - 6. 범죄로 인정되는 사항
 - 7.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 9. 감사상 취한 조치
 - 10. 모범이 되는 사항
 - 11. 건의 사항
 - 12. 그 밖의 특이 사항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은 감사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은 감사실시 실시 결과 지시, 기타 조치를 요하는 사 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종합 감사 및 부분감사는 30일이내에 기강감 사는 15일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 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결과 지시, 그 밖의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 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30일이내에 기강감사는 15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u></u>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우	· 배여부 등 검토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I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	내용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2-780호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인계인수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9, 07,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인계인수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인계인수규칙"을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으로 띄어쓰기함.
- 지방자치법 제97조를 제106조로 변경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제66조로 변경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제70조로 변경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를 "사람"으로 하는 등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개정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소 : (우400-701)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가 9)

인천광역시 중구청 기획감사실(법무감사팀)

▶ 전화 : 032)760-7084 [fax 032)760-7059]

□ 공청회 개최 : 없음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 . .

제 출자:기획감사실장

□ 제 안 이 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 나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제명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인계인수규칙"을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으로 띄어쓰기함.
- 지방자치법 제97조를 제106조로 변경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제66조로 변경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제70조로 변경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를 "사람"으로 하는 등 한글 맞춤법에 따 라 개정함

□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6조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인계인수규칙"을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 부행정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책임하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다
-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1.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단·과의 장 이상 의 직위에 있는 사람
 - 3.소속기관의 장
 - 4.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 5.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경력직 7급 공무원 이상인 사람
 - 6.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단·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한까지 인계 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같은 실·단·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에 따른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실·단·과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실·단·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을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단·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확인자는 소관 실·단·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실·단·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 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에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단·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3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무 대비표

혂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인계인수규칙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지방자치법</u> 제97조 및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의 사 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 및 보조 기관등 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 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 다.

- 1. 구청장
- 2. 직제규칙과 실과규칙에서 정한 계장이 상의 직위에 있는 자(경찰국을 제외한 다)
- 3. 소속기관의 장
- 4 구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 5.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경 력직 7급 공무원 이상인자
- 6.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 상 특별히 책임의 소개를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부터 제70조까 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사 무인계인수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 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 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 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 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 다.
 - 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라 한다)
 -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에서 정한 실•단•과의 장 이상 의 직위에 있는 사람
 - 3. 소속기관의 장
 - 4.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재무회 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 5.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경 력직 7급 공무원 이상인 사람
 - 6.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단·과장이 업무성질 상 특별히 책임의 소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제2조에 해당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 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 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 일내에 인 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 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 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 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 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③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 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 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한까지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 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 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다 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 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 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③ 같은 실·단·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 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 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사무의 인계|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 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 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 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②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 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 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 다.
 - 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 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 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 인수서 작성 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 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 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 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 하급자가 하나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 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 다.
-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 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ㅇㅇ대장 및 ㅇㅇ 에 따른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 ①실·과장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실·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을 경우에는 계등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
- 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 야 한다.
- 인 날인하여야 한다. 확인자는 소관 실시 <u>과장</u> 또는 작성자가 된다.
- 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 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① 실·단·과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 는 실·단·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을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 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 ②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중 재산·재정· │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 중 재산·재 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 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 여는 사무주관 실·단·과에서 총괄 작성 하여야 한다.
- ③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 ③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확인자는 소관 실·단·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 ④제3항의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현 했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사무의 인|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계인수를 할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 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

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

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 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 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 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로 하고, 소 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 관의 소관 실·국·과·계장중에서 구청장 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사무인계인|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 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 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 다.
 - 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 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 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 다.
 - 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인계인수를 할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 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 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 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 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국·실·단·과장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 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 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 다.
-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 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 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 다.
-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현 행

-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에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에 사무인계) ①지방자치 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여야 한다.
 - ②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② 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u>당해</u>기구와 업무변경담당 <u>실·과</u>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 야 한다.
 -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 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 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 단체간의 기구 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 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u>해당</u>기구와 업무변경담당 <u>실·단·</u> 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 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3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③ 제1항 및 제3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 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서볔 혐의 및 의겨수렴서

	무서 멀	. 엽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 구 분	유	무
	1. 관련법령 위	배여부 등 검토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	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	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	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	내용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2-781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9 07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개정법에 따라 개정함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소 : (우400-701)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관동1가 9) 인천광역시 중구청 기획감사실(법무감사팀)

▶ 전화 : 032)760-7084 [fax 032)760-7059]

□ 공청회 개최 :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2. . . .

제 출자:기획감사실장

□ 제 안 이 유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개정

□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무원 행동강령」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 중구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인가·허가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라.재결 · 결정 · 검정 · 감정 · 시험 · 사정 · 조정 · 중재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징집 · 소집 ·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사.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아.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청(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에 있거나 신청 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다.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 받는 공무원

라.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2."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 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3."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본청·인천광역시 중구의회·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등 소속 공무원과 이에 파견된 공무원, 서비스·정보 또는 자문을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직·일용직 기타 형태와 관계없이 근무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행동강령 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있다.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 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사람이 직무관련 자인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협박 또는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청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사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 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도시개발·건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투자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4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제공되는 금품등
 - 2.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단속, 지도, 민원 업무부서 근무직원제외)
 - 3.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제공하는 교통· 숙박 또는 음식물
 - 4.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 공되는 금품 등
 - 6.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제공되는 금품 등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2.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3.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제공되는 금품등
 - 4.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제공하는 금품 등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사람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으로 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원이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 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친족에 대한 통지

2.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신문·방송 또는 제2호 규정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로 지급되거나 소속 기관장 명 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위반시의 조치

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2.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및 단체 등에 기증한다.

3.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불우 이웃돕기 시설 및 단체 등에 기증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사람·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 제22조 (교육) ①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 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구청장은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 이 규칙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②행동강령책임관은 구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제24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구청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혀 행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장 총칙

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대통 령령제21238호)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중 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 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 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 인 또는 단체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 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 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공무원이 준 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하다.

-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직무관련자"란 인천광역시 중구공무 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 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 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중 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현 행

나. 인가·허가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 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등으로 직

또는 단체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 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 정·중재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 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바. 중구를 상대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 인 또는 단체
-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 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아.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 청(신고)중에 있거나 신청(신고)하 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 나. 인가·허가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 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등으로 직 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수사·감사·감독·검사·단속·행정지 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재결·결정·검정·감정·시험·사정·조 정·중재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 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징집·소집·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 다)를 상대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 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 는 단체
- 사.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 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아. 장부·대장 등에의 등록·등재의 신 청(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 인이나 단체

------행

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 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중에 있

이나 단체

혀

차.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 는 개인이나 단체

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 카. <u>기타</u>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2."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 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또는 평가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 자.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중에 있 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이나 단체
- 차.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 는 개인이나 단체
- 카. <u>그 밖에</u>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 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 2."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 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등 의 직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 공무 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 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 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 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행

혂

-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 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제공되 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 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4. "향응"<u>이라 함은</u>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제 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 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

- 라.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공무원
- 3. "선물"이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4.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 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u>중구 본청·구</u>[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u>구 본청·인천</u> <u>의회·직속기관·동사무소</u> 등 소속 공무원 과 이에 파견된 공무원, 서비스·정보 또 는 자문을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직·일용 직 기타 형태와 관계없이 근무하는 모 든 자에게 적용된다.
 - 광역시 중구의회·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 기관 등 소속 공무원과 이에 파견된 공 무원, 서비스·정보 또는 자문을제공하기 위하여 계약직·일용직 기타 형태와 관계 없이 근무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혂 행

-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 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 니하거나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이하"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 다)과 상담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 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 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 담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이나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이를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구 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 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 스로 그 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였 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대한 처리)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해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상 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 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 과 상담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 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 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 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이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 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 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혂 행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하여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 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은 "별지제 1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 로 소명하거나, "별지제2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행동강령책 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 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 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 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은 별지 제 1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이 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 과 상담할 수 있다.
-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제5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 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다고 판 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 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다고 판 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혂 행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 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 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 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 인 경우
-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u>자가</u> 직 무관련자인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그 권한의 범위안에서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있다.

-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 무관련자인 경우
-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 인 경우
-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u>사람이</u> 직 무관련자인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권한의 범위안에서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 정 안 혂 행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 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 속기관의 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 처리) ①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등으 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협박 또는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 로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 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 청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 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다.
- 리) ① 공무원은 정치인 또는 정당등으로 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협박 또는 강요 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 호서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구 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구 청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 은 해당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다.

-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 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 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u>자에</u> 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 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 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 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 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행

혂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 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 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사용 금지) 공무원 제10조의2 (직위의 사적사용 금지) 공무원 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 명칭이나 직 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구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 게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공무원은 제11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 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 다.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 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 ②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 서는 아니 된다.
-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 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혂 행

-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의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 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도 시개발·건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 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 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도 시개발·건설 담당부서 업무담당자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투자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제한) ①공 제14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 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 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 여제공되는 금품등
 - 2.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단속, 지도, 민원 업무부서 근무직원제외)
-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 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 여제공되는 금품등
- 2.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단속, 지도, 민원 업무부서 근무직원제외)

혂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 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제공하 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 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 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 적으로제공되는 금품 등
-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제공되 는 금품 등
- 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 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1.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2.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통상적으로제공되는 간소한 선
-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제공 되는 금품등
-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제공하는 금 품 등

-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 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 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 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 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 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제공되 는 금품 등
-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 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통상적으로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제공 되는 금품등
-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제공하는 금품 등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

행

혂

- 아서는 아니된다. 다만,제1항 및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④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u>존·비속</u> 이제1항 내지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 정 안

-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사람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u>아니 된다.</u> <u>다만, 제1항 및 제</u>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④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 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제14조의2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 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 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혂 행

- 제15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①공무|제15조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① 공무 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 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 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제4호서식"에 따라 행동강 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공무원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 의·회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 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 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회의 등에 서 강의·강연·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 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서는 아니 된다.

혂 행

- 제16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제16조 (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 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 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 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 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 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및비 밀보장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 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 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제5호서식 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 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 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 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 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 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 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 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 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혂 행

- 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17조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 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방송 또는제2호 규정에 따른 직 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 망 등을 통한 통지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 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친족에 대한 통지
-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 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 규정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 망 등을 통한 통지
-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 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 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공되는 경조

행

혂

사 관련 금품등

3. 구청장 명의로 지급되거나 소속 기관 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 품 등

-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 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공되는 경조 사 관련 금품등
- 3.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라 한다) 명의로 지급되거나 소속 기 관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 품 등
- 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공무원 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 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 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 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누구 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① 누구 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 을 알게된 때에는 소속된 기관의 장, 당 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 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소속된 기관의 장, 당해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 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혂 행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제6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 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 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 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 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 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행동강령책임관은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공무원으로부터제출받은 소명자 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제6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 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 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 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 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 당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 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다.

- 또는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 품 등을제공받은 공무원은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 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별지제7호서식 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21조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제14조 제21조 (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 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 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구청장에게 청 구할 수 있다.

혂 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제공자나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 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u>각호의</u> 기준에 의하여 처 리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및 단체 등 에 기증하다.
-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불우이웃돕기 시설 및 단체 등 에 기증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u>각 호의</u> 기준에 의하여 처 리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 는 물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
-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 시설 및 단체 등에 기증한다.
- 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불우이웃돕기 시설 및 단체 등에 기증한다.

혀 행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 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 지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 을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 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사람·제공 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 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 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 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 다.
- 제22조 (교육) ①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하 제22조 (교육) ①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하 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구청장은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 이 규칙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신규 임용시 이 규칙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령책임관은 감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중구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 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행동강|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행동강 령책임관은 감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구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 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 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u>아니 된다.</u> 설하여서는 <u>아니된다.</u>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제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u>별지</u> 9호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u>제9호서식에</u>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다. 하다. 제24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구청장은 이 제24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구청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제정하여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u>사항을 제정하여</u> 시행 하여야한다. 시행 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 구 분	û	무
	1. 관련법령 위	배여부 등 검토		
검토사항	2. 행정규제, 물기	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수	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	도자료) 반영여부		
	6. 기타 문제점			
		부서별(실・과) 의견		
협의개요	실·과별	제출의견	검토	내용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2-783호

공시 송달 공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체납처분 등)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납부의무 자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하고, 주소지에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차량압류 통지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9. 10.

인 첫 중 구 청 장

1. 공 고 명 :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차량압류 통지

2. 공고기간 : 2012년 09월 10일 ~ 2012년 09월 24일(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4. 공고내용

가. 목 적 :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차량 압류 통지

나. 납부의무자 및 납부독촉액등

	납부의 드	구 자		대상사업토	체납액	(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지	본세	최초납기	가산금
YFC건설 주식회사	120111	인천 ³ 운남동 4 정동빌딩	427-3	운북동 360-22 압류차량 86구3148	546,993,980	2009.03,30.	최초 첫달 3% 가산, 이후 납부 시까지 월 1.2%(최대60개월)

5. 개발부담금이 체납되시면 완납일까지 체납 첫달은 체납금의 3%, 다음달부터 체납금의 1.2%의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 일정 기간 경과 후 『국세징수법』의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압류된 재산이 공매(의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중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032-760-7305 담당자 현주선]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2-784호

유기동물보호공고 및 보호의뢰

동물보호법 제7및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유기된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 반환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2012, 09, 11,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2. 9.11 ~ 9.21

2. 유기동물발생현황

공고번호	품종	모색	포획장소	포획 일시	연령	체중 (kg)	성별	건강 상태	특징	비고
인천-중구- 2012-00270	믹스견	노랑+ 콧등 흰색	구민 체육센타 축구장	2012- 09-09	10개월 추정	18.00	수컷	치료요함	잘먹지못하고, 굉장히 피로한것으로 사료됨	공고 완료
인천-중구- 2012-00269	시츄	진노랑 +흰색	그랜드 웨딩본관	2012- 09-08	5살추 정	6.00	암컷	치료 요함	약간의피부병, 불안해하며 계속 짖어댐	공고 완료
인천-중구- 2012-00268	고양이	흰색+ 검정	신흥동 3가3-5 상가	2012- 09-08	4개월 추정	1.50	수컷	치료 요함	상가건물에 끼어가지고 꼼작못해서 다소탈진상태 임,겁에질림	공고 완료
인천-중구- 2012-00267	믹스견	흰색+ 검노랑	영종자이 아파트앞	2012- 09-07	8개월 추정	7.00	암컷	양호	비교적양호한 편임	공고 완료
인천-중구- 2012-00266	고양이	검회색 (샴고 양이)	영종L.H7 단지	2012- 09-07	3살 추정	3.50	수컷	치료 요함	장염증상으로 설사하고 힘이 없어보임	공고 완료

3. 유의사항

- ㅇ 반환시 동물보호법 제7조제5항 규정에 의거 보호기간동안 동물의 포획,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ㅇ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알 수 없을 경우,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동물보호법 제7조제3항, 제4항 규정에 의거 중구에 귀속되며 귀속된 동물은 동물애호가에 기증 하거나 도태처리(안락사)됩니다.

	유기동물을 분양 받고자 하는 동물애호가는 2012. 9. 21일까지 경동동물병원으로 연	라
		7
	주시기 바랍니다.	
0	유기동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animal.go.kr)에서 확	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2-787호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상호	소재지	판매구분	폐업일자
GS25 영종자이점	중구 운남동 운남지구 50블럭 영종자이아파트 상가 1-101	제7조의3제1항	2012. 9. 11.
진흥상가	중구 신흥동3가 7-20	제7조의3제1항	2012. 9. 11.

-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8항,제9항,제10항의 규정에 의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영업소에 한하여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지정할 예정이오니 희망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 접수기간 : 2012, 9, 12 ~ 2012, 9, 19
 - 나. 접수 및 문의처: 중구청 경제지원과(☎ 032-760-7363)
 - 다. 접수서류
 -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4) 우선 지정 자격증명서류 각 1부.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 동주민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청 발급)
 - ※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 라. 참고사항
 - (1)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3) 우선지정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12. 09. 11.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2-789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사업장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진처리명령(자진회수 또는 폐차)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12. 09. 12.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2.09.12 ~ 10.11 (30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명칭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4. 공고내용 :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방치자동차를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자진

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됨은 물론 동법 제85조 및 제86조(통고처분) 규정에 의거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교통행정과 ☎ (032)760-7595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반송분 내역

n) ÷	차량	ਨ ੇ ਸ਼ੀ	소유자		발견장소	보관장
번호	차량 번호	\ \frac{1}{5}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위 치)	보관장 소
1	경기66 마7508	EF쏘나타	김종남 (710814-1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로 296	인천 중구 을왕동 678-46 선녀바위	대신 폐차 산업㈜
2	경기46 고5429	크레도스	이수용 (521223-1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구정 발산로 421번길24,729호 (장항동,신성하이네스트)	인천 중구 항동7가 비취맨션@ 2동 앞	대신 폐차 산업㈜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2-790호

담배소매업 폐업신고3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 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상호	소재지	판매구분	폐업일자
코스메니아	중구 신포동 1-14	제7조의3제1항	2012. 9. 12.

-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8항.제9항.제10항의 규정에 의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영업소에 한하여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지정할 예정이오니 희망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 접수기간 : 2012, 9, 13 ~ 2012, 9, 20
 - 나. 접수 및 문의처: 중구청 경제지원과(☎ 032-760-7363)
 - 다. 접수서류
 -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4) 우선 지정 자격증명서류 각 1부.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 동주민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청 발급)

※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라. 참고사항

- (1)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3) 우선지정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12. 09. 12.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2-792호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이사, 사업장 소재지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진처리명령(자진회수 또는 폐차)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12. 09. 12.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2.09.12 ~ 09.11 (30일간)

2. 공고대상 : "붙임"참조

3. 공고명칭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4. 공고내용 : 자동차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방치자동차를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자진

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됨은 물론 동법 제85조 및 제86조(통고처분) 규정에 의거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동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중구청 교통행정과 ☎ (032)760-7595

무단방치자동차 처리명령서 반송분 내역

n) ÷	차량	<u> </u>		소 유 자	발견장소	보관장
번호	호 차량 차명		성명 (주민등록 주 소 번호)		발견장소 (위 치)	소
1	경기66 마7508	EF쏘나타	김종남 (710814-1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용설로 296	인천 중구 을왕동 678-46 선녀바위	대신 폐차 산업㈜
2	경기46 고5429	크레도스	이수용 (521223-1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구정 발산로 421번길24,729호 (장항동,신성하이네스트)	인천 중구 항동7가 비취맨션@ 2동 앞	대신 폐차 산업㈜

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2-793호

유기동물보호공고 및 보호의뢰

동물보호법 제7및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유기된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 반환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2012. 09. 13.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2. 9.13 ~ 9.23

2. 유기동물발생현황

공고번호	품종	모색	포획장소	포획 일시	연령	체중 (kg)	성별	건강 상태	특징	비고
인천-중구- 2012-00276	고양이	흰색+ 검정	연안 아파트상가 주영농산	2012- 09-11	40일 추정	1.00	수컷	양호	사료를 잘못먹어 이유식과 같이 급여	공고 완료
인천-중구- 2012-00275	고양이	흰색+ 검정	연안 아파트상가 주영농산	2012- 09-11	40일 추정	1.00	암컷	양호	사료에 익숙하지못해 이유식과 같이 급여	공고 완료
인천-중구- 2012-00274	고양이	흰색+ 검정	연안 아파트상가 주영농산	2012- 09-11	40일 추정	1.00	암컷	양호	사료에 익숙하지못해 이유식과 같이 급여	공고 완료
인천-중구- 2012-00273	고양이	흰색+ 검정	연안 아파트상가 주영농산	2012- 09-11		1.00	암컷	양호	아직도 사료먹는것에 익숙지 못해,이유식섞 어 먹임	공고 완료
인천-중구- 2012-00272	고양이	흰색+ 검정	연안 아파트상가 주영농산	2012- 09-11	40일 추정	1.00	암컷	양호	아직까지 사료 먹는것이 익숙지못함, 어미는 젖 안먹임	공고 완료
인천-중구- 2012-00271	고양이	흰색+ 검정	연안 아파트상가 주영농산	2012- 09-11	3살 추정	4.00	암컷	양호	새끼낳고 나갔다 찾으러왔다 포획됨	공고 완료

3. 유의사항

- ㅇ 반환시 동물보호법 제7조제5항 규정에 의거 보호기간동안 동물의 포획, 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ㅇ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알 수 없을 경우,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동물보호법 제7조제3항, 제4항 규정에 의거 중구에 귀속되며 귀속된 동물은 동물애호가에 기증 하거나 도태처리(안락사)됩니다.
- ㅇ 유기동물을 분양 받고자 하는 동물애호가는 2012. 9. 23일까지 경동동물병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o 유기동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animal.g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영종출장소공고 제2012-57호

공시 송달 공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청문을 실시, 의견이 없어 처분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09. 07.

인천광역시중구영종출장소장

○ 공고기간 : 2012. 09. 10. ~ 2012. 09. 24. (15일간)

○ 공고의 내용

업소명 (신고번호)	이가네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대 표 자	이 승 래
소 재 지	인천 중구 운남동 438-1
위반 위반 분류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
사항 위반 내용	상동
처 분 내 용	영업소폐쇄
영업소 폐쇄일	2012년09월07일
지 시 사 항	위 영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 하였으니 본 처분사항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무신고 영업을 할 경우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